

영국 소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을 위한 회계법규의 이해

I. 개요

회계는 주주, 채권자, 국가 및 기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운용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편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회계는 객관성과 엄격성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회계장부는 주주, 채권자, 기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며, 특히 투자자들에게 회계장부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최근 투자자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투자처를 확대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다국적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회계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기업 및 학자들은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회계규범은 크게 유럽의 회계기준과 미국의 회계기준으로 나뉘었다. 유럽의 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틀만 제시한 후, 세부적인 것은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하

여 미국의 회계기준은 준칙중심 회계로 회계에 관하여 업종별로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중 어느 것을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또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FRS 또는 IAS)으로 채택하느냐에 있어 유럽진영과 미국진영의 대립이 고조되던 가운데, 미국의 엔론(Enron)사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유럽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유럽은 통일 유럽국가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통일된 회계규범을 제정하는 데 많은 합의가 있었고, 여기에 주도적인 국가는 영국이었다.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원은 영국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활동과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영국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수용하여 이를 규범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2011년 1분기부터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채택과 법규범과 부조화를 비롯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 등이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회사를 위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우리 회계기준원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계획에 관하여 발표했으나 소규모 회사의 회계기준의 제정 및 시행에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공백이 존재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규모 회사를 위한 회계기준 정립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회계 선진국인 영국의 회계규범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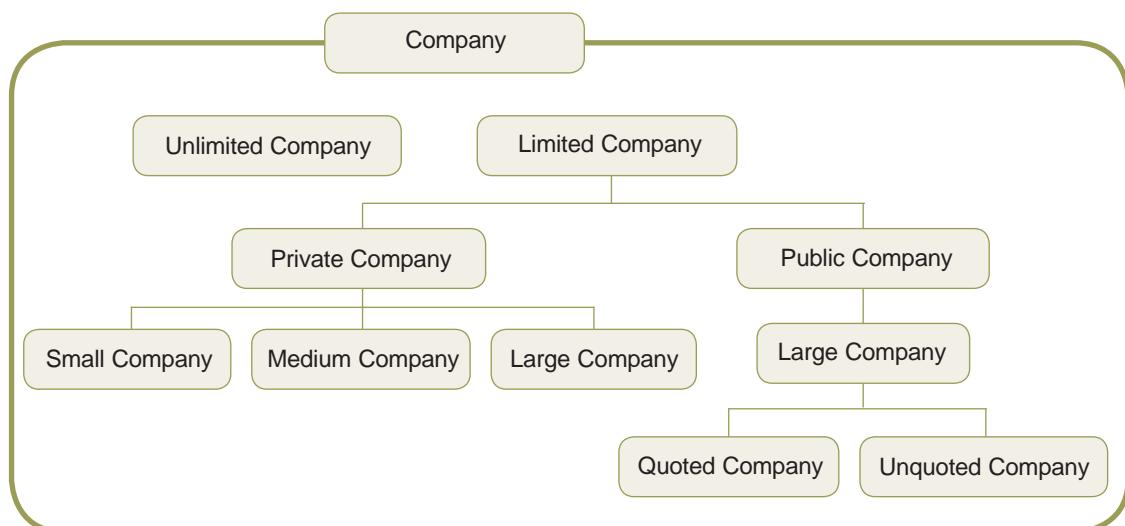
II. 회사의 종류

영국의 회계법규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회사법에서 회

사를 일정한 분류에 의하여 구분한 후, 각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회계법규가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회계법규의 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영국의 회사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와 회사와 개념과 성질은 상이하지만 ‘단체’라고 볼 만한 기타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회사의 성질에 따른 분류

영국의 회사는 크게 유한회사(limited company)와 무한회사(unlimited compan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한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 또는 보증에 한하여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로, 모든 공개회사(public company)와 폐쇄회사(private company)는 유한회사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2006년 영국 회사법은 회사를 1차적으로 유한회사와 무한회사로 분류하며, 그 기준은 주식 또는 담보가 회사의 정관을 통해 사원의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가에 따른다.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 그 한도를 정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회사는 무한회사로 분류된다. 유한회사는 폐쇄회사와 공개회사로 다시 구분되며, 유한회사가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식발행을 통하여 주주의 책임을 한정하거나, 각 멤버들이 회사의 부채에 관하여 기여할 담보를 정하는 방법이다.

2006년 회사법 스케줄 4에서 폐쇄회사와 공개회사에 관하여 정의를 두고 있는데, 공개회사란 법인설립인가증(a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공개회사로써 받은 경우와 회사의 등록 및 재등록시 법상 공개회사가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회사를 말한다. 폐쇄회사에 관하여는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2. 회사의 규모에 따른 분류

각 회사는 회사의 설립, 운영, 및 결산에 대하여 회사법상 개별 회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회계에 있어서 2006 영국 회사법은 회사의 규모를 분류하여 회계의 적용을 달리하

고 있다.¹⁾ 2006 영국 회사법 제475조 ff 항은 회사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회사로 분류하며, 이 기준은 폐쇄회사인가 또는 공개회사인가 여부와 관계는 없으나 공개회사의 요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소규모 회사는 (1) 매출액이 650만 파운드 미만, (2)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326만 파운드 미만, (3) 종업원의 수가 50인 미만 중 2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규모 기업집단은 (1) 순 매출액이 650만 파운드 미만(또는 총 매출액 기준 780만 파운드 미만), (2)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326만 파운드(또는 총 자산액 390만 파운드 미만), (3) 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 2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규모 회사는 (1) 매출액이 2,590만 파운드 미만, (2)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1,290만 파운드 미만, (3) 종업원의 수가 250인 미만 중 2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규모 기업집단은 (1) 순 매출액이 2,590만 파운드 미만(또는 총 매출액 기준 3,110만 파운드 미만), (2) 대차대조표 상 자산 총액이 1,290만 파운드(또는 총 자산액 1,550만 파운드 미만), (3) 종업원 수 250인 미만 중 2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06년 영국회사법 제444조 ff항, 제465 ff항.

〈표1〉 소규모 및 중규모 회사(기업집단) 기준

구 분	매출액	대차대조표 총액	종업원 수
소규모 회사	6,500,000 £	3,260,000 £	50인
소규모 기업집단	6,500,000 £ 또는 7,800,000 £	3,260,000 또는 3,900,000 £	
중규모 회사	25,900,000 £	12,900,000 £	250인
중규모 기업집단	25,900,000 £ 또는 31,100,000 £	12,900,000 £ 또는 15,500,000 £	

출처: The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Groups (Accounts and Reports) Regulation 2008 Explanatory

영국의 회사는 대부분 소규모 회사가 주를 이루며, 그 수는 폐쇄회사의 경우 소규모 회사는 1,410,800개, 중규모 회사는 33,900개, 그리고 대규모 회사는 24,100개이고, 공개회사의 경우 소규모 회사는 6,900개, 중규모 회사는 4,600개, 대규모 회사는 26,300개이다.²⁾ 즉 영국은 소규모 회사가 1,417,700개로 중규모 회사 38,500개와 대규모 회사 50,400개를 합친 수보다 1,328,800 개가 더 많이 존재한다.

3. 기타의 분류방법

모든 회사는 공개회사 또는 폐쇄회사로 구성되나, 몇몇 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회사에는 상장회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를 ‘listed company (이하, 일반상장회사)’라고 표현하지만, 상장

된 시장이 어딘가에 따라 상장회사를 ‘quoted company’와 ‘unquoted company’라고 세분화 할 수 있다. 일반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영국상장기관(UK Listing Authority)에 상장이 되어 있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 이 경우 오로지 공개회사만 상장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규율은 일반 회사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 이러한 상장회사는 ‘quoted company’로 대체되기도 하며, 그 개념은 유사하지만 2006년 영국 회사법은 ‘quoted company’에 관한 정의만 담고 있다. ‘quoted company’란 회사 자체의 지분이 2000년 영국 자본시장법 103조 1항에 해당하거나,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Area)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거나, 뉴욕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및 나스닥(Nasdaq)에서의 주식 거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3),4)} ‘Unquoted company’는 ‘quoted company’가 아닌 회사를



- 2) The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Groups (Accounts and Reports) Regulation 2008 Explanatory의 부록 B 참조.
- 3) 2006년 영국 회사법 제385조.
- 4) Brenda Hannigan and Dan Prentice, *The Companies Act 2006 - A Commentary*, Butterworths, Edinburgh, 2010, p. 97.

뜻한다. 일반상장회사와 ‘quoted company’의 등록 수는 유사하지만 ‘quoted company’의 수가 약간 더 많다.⁵⁾

III. 영국 회계법규의 체계

EU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영국은 2006년 대대적인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회사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관련 개별법규의 제·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법규에는 ‘2008년 소규모 회사와 기업집단의 (회계와 보고서) 규칙’과 ‘2008년 중·대규모 회사와 기업집단의 (회계와 보고서) 규칙’이 있다. 소규모 회사의 회계법규를 살펴보기에 앞서, 아래에서는 영국 회계법규의 체계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1. EU지침과 IFRS의 도입

EU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두 개의 지침을 이미 제정하였다. 첫 번째가 1978년에 제정한 ‘the Fourth Di-

rective’⁶⁾로 여기에서는 개별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첫 번째 지침이 제정되고 난 지 5년 후에 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the Seventh Directive’⁷⁾가 제정되었고, 연결재무제표라는 개념이 EU 회원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이 지침은 기업집단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EU의 회계지침은 경제사정이 변함에 따라 수없이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회계규정은 현대의 회계관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002년 7월에 EU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⁸⁾ EU의 자본시장은 미국의 자본시장을 경쟁대상으로 여기면서, 정치적 및 상업적 목적의 갈망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및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지침은 EU의 증권시장 내 상장된 모든 회사는 2005년 1월부터 높은 수준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특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실행 전 영국 내 등록된 회사는 규모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영국 회계기준원(the UK Accounting Standards Boards)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 따



- 5)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Groups (Account and Reports) Regulation 2008 Explanatory Memorandum의 Evidence base for Summary sheet 참조.
- 6) Fourth Council Directive (EEC) 78/660. OJL 222. 14.8.1978.
- 7) Seventh Council Directive (EEC) 83/349, OJL 193. 18.7.1983.
- 8)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Regulation 1606/2002/EC 19 July 2002.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물론, 금융서비스위원회 상장규칙(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isting Rules)은 상장회사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를 행하였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회사의 회계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Small Entities)을 제정하였다.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보다 더욱 복잡한 회계 모델로 인식되었고, 영국은 EU의 지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시행하고 또한 회계체계를 수정하여야 하였다. EU가 수정을 요구한 분야는 상장된 기업집단 내 자회사, 기업집단이 아닌 상장회사, 상장되지 않은 대규모 회사, 중규모 및 소규모 회사, 공공분야의 회사에 대한 회계규정이다.

2006년 영국 회사법은 EU 법규의 내용을 직접 수용하였고, 특히 380조 내지 474조에서는 EU 법규상 두 가지 형식의 재무제표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1) SI 2008/409, 즉 2장과 4장은 소규모 회사와 기업집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2장은 개별 재무제표에 관하여, 4장은 기업집단 재무제표에 대하여 규정한다.⁹⁾

2) SI 2008/410, 즉 2장은 대규모 회사와 중규

모 회사 및 기업집단에 대하여 적용한다.¹⁰⁾

이 두 규정은 소규모 및 중·대규모 회계규칙을 의미하며, 각 규모의 회사에 따라 적용하는 회계규칙이 다음을 2006년 영국 회사법에 명시하고 있다.

2. 2006 회사법상 회사의 회계규정

영국회사법 제384조와 제395조는 이사로 하여금 매 회계년도에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여야 한다. 이때 재무제표는 회사의 거래와 재무상태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적절하게 효시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감사 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한다(제498조 2항). 재무제표는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야만 하며, 이때 이사회 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제414조 1항), 승인은 대차대조표상에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제414조 2항).

2006년 회사법 개정 이전에는 1985년 영국 회사법은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true and fair view)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이후 회사법에서는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 국제회계



- 9) SI 2008/409, part 2 and 4, apply to small companies and groups. Part 2 deals with individual accounts and part 5 deals with group accounts.
- 10) SI 2008/410, part 2, applies to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groups.

기준, 그리고 소규모 및 중·대규모 회계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는 영국 회사법상 회계 작성 시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진실하고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면 이사는 재무제표를 승인하여서는 안된다(제393조 2항). 이 문구는 1948년 영국 회사법에서 처음 소개되어(1948년 영국회사법 제149조 1항), EU의 78/660 지침에 의하여 수용되어 발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재무상태와 손익에 관하여 진실하고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2006년 영국 회사법 제2조). 이 원칙은 EU 83/349 지침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2002년도 규칙에도 수용되었고, 2002년도 규칙 제3조 2항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 원칙과 반대되는 회계기준을 정립한 경우에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¹¹⁾

3. 소규모 및 중·대규모 회사의 회계규칙

영국의 회계규칙은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및 중·대규모 회계규칙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및

중규모 회사와 기업집단 (회계와 보고서) 규칙 2008¹²⁾은 EU 지침 78/660, 83/349, 86/635, 91/674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정이다. 이 규칙은 회사법상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사의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다. 또한 중규모 회사를 위한 몇몇의 예외적인 규정을 둘 으로써, 중규모 회사가 대규모 회사와 같이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불편을 덜기 위함이다.

소규모 회사와 기업집단 (재무제표와 이사의 보고서) 규칙 2008(이하 소규모 회사의 회계 규칙)¹³⁾은 EU지침 78/660과 83/349를 구체화 한 실체규정이다.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2006년 영국 회사법 제15장에 규율된 경우에 준하며, 특히 소규모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사의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다.

IV. 2008 소규모 회사와 기업집단의 회계와 보고서 규칙의 주요내용

소규모 회사의 회계규칙은 2008년 2월 19일 개정되어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문의 8개의 조항과 총 8개의 스케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1) IAS 1. paragraph 13.

12) The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Groups (Accounts and Reports) Regulation 2008 (SI 2008/410).

13) The Small Companies and Groups (Accounts and Directors' Report) Regulation 2008 (SI 2008/409).

2008년도 소규모 회사와 그룹 (회계와 이사의 보고) 규칙

- Part 1. 총설
- Part 2. 개별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 Part 3. 이사의 보고서
- Part 4. 기업집단 회계의 형식과 내용
- Part 5. 해석 및 설명

Schedule 1. 회사법상 개별 재무제표 – 규칙 3(1)

- Part 1. 일반원칙과 재무제표의 형식
- Section A. 일반원칙
- Section B. 재무제표의 형식
- Part 2. 회계원칙
- Section A. 회계원칙(강행규정)
- Section B. 역사적 원가주의
- Section C. 선택가능한 회계원칙
- Section D. 공정가치회계
- Part 3. 회계장부의 주석

Schedule 2. 회사가 그룹회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사업에 관한 정보(회사법 또는 국제회계기준상 개별재무제표) – 규칙 4

- Part 1. 필수 정보
- Part 2. 수익권참조의 해석

Schedule 3.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보(회사법 또는 국제회계기준상 재무제표) – 규칙 5, 9

- part 1. 필수 정보
- Part 2. 보충 조항

Schedule 4. 회사법상 등록기관에의 교부를 위한 요약 재무제표 – 규칙 7

- part 1. 대차대조표
- part 2. 재무제표 주석

Schedule 5. 이사의 보고서에 관한 문제 – 규칙 6(1)

- 총설
- 정치헌금과 지출

Schedule 6. 기업집단 재무제표 – 규칙 8(1), 10

- part 1. 회사법상 기업집단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 part 2. 기업집단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경우 관련사업에 관한 정보(회사법 또는 국제회계기준상 그룹 재무제표)

Schedule 7. ‘조항’ 용어의 해석 – 규칙 12

- part 1. 이 규칙의 목적과 의미
- part 2. 2006년 회사법의 18장과 23장의 목적과 의미

Schedule 8. 일반적인 설명 – 규칙 13

- 금융상품
- 고정자산과 현행자산
- 역사적 원가주의
- 열거된 상품
- 대출
- 중요성
- 지분이익
- 취득원가
- 공표된 이익과 손실
- 인건비

영국에 등록된 소규모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을 제외하고 본문과 스케줄 1, 3, 4, 5, 7, 8을 적용하게 된다. 그 중 실제 회계기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본문, 스케줄 1과 8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3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1. 본문의 구성

소규모 회사의 회계규칙의 본문은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케줄 1부터 8까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1장 총설에서는 적용범위(제1조)와 발효일(제2조)을, 제2장 개별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에서는 회사법상 개별 재무제표의 구성(제3조), 관련사업에 관한 정보(제4조), 이사의 보수(제5조), 등록기관에의 회사의 서류 교부(제6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이사의 보고서는 소규모 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7조), 제4장은 기업집단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규율하고 있다(제8조 내지 제11조). 제5장은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조항의 정

의(제12조)와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제13조)에 관하여 설명한다.

2. 스케줄 1 – 회사법상 개별 재무제표

제1장은 일반원칙과 형식으로 제1절에서 일반원칙을, 제2절에서는 재무제표의 형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 표시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의 준수의무에 관하여 설명한다. 특히 제2조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시 전년도와 동일한 형식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새로운 형식을 사용할 경우 새로운 형식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회사의 회계처리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급비, 배당비용과 사채의 발행비, 연구비에 관하여 자산으로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모든 경우에 이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9조). 제2절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써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열거하고 있다.

제2장은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and Rules)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1절은 강행규정으로써의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을, 제2절은 역사적 원가주의, 제3절은 선택가능한 회계원칙, 제4절은 공정가치회계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제2절 내지 제4절까지의 규정은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며 이사가 재무제

표 작성 시 어떠한 원칙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결정권이 주어진다.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자산은 본 절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이사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효과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10조). 회사의 회계에 있어서 회사는 사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계속기업으로 가정하며(제11조), 매년 재무제표 작성 시 일관되게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제12조).

제2절에 따르면 재무제표 상 자산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정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의하여 기록되나(제17조), 고정자산의 가치가 경제적 효용성이 한정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가상각하거나 감손하여야 한다(제18조 내지 제20조). 유동자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의하여야 하나, 유동자산의 실제 가치와 취득원가 및 제조원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4조). 제3절의 선택가능한 회계원칙은 제2절의 역사적 원가주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무형고정자산과 유형고정자산의 예외적인 경우와 투자로 간주되는 금융상품에 한한다.

본장 제4절의 공정가치회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공정가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차대조표는 특정한 시점에서 회사의 재무상황을 도식화한 표로써, 일부 자산의 경우에 처음에 취득하였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처음에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 또는 제조원가라 하며, 현재 측정한 가치를 현재가치 또는 시장가치라 한다. 그리고 이 자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될 때 가치가 상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순실 현가능가치라고 한다. 공정가치회계는 이 모든 가치평가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가치평가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정가치회계의 대상은 금융상품이 주를 이루며, 여기에 만기를 가진 부채는 제외한다. 금융상품에는 주로 파생상품과 해지상품이 해당되고(제36조, 제38조), 그 외에 투자부동산, 생물(동물과 식물)자산이 있다(제39조).

재무제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주석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규정한다. 주석으로 요구되는 정보에는 유보와 배당(제43조), 회계정책(제44조)과 대차대조표상의 추가정보로서의 수종의 주식 발행 내역, 주식배당, 고정자산, 투자상품의 가치,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자산, 준비금과 준비금의 이전, 부채액의 세목, 담보와 기타 재정지원이 있다(제45조 내지 제58조). 또한 손익계산서는 주석으로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정보, 회전율, 전년도 손익계산서의 총액 표시, 특별수익 및 특별비용의 공시, 외국통화의 합계, 휴면회사의 대리인 활동여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59조 내지 제63조).

영국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 중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 스케줄 1에 따라 회사의 회계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중규모 및 대

규모 회사의 회계규칙에 따라 작성한 경우에는 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3조 3항).

3. 스케줄 8 – 일반적인 설명

스케줄 8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금융상품, 고정자산과 현행자산, 역사적 원가주의 원칙, 상장된 투자상품, 대출, 회계작성시 중요성 판단, 지분이익, 구입원가, 공표된 이익과 손실, 인건비에 관하여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내지 제6조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8조 내지 제11조는 손익계산서상 정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스케줄 2에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란 주로 파생상품을 의미하며, 이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현금 또는 기타 금융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장래에 구매 및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과 이것의 진행 및 계약 시점에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계약 또는 상품의 교부로 계약관계가 해소될 것이 예상되는 금융상품은 제외된다(제1조). 본 조의 금융상품은 EEC 의회 지침에서 사용한 “금융자산의 판매가 가능할 때”, “기업결합”, “계약에 근거한 상품”, “파생상품”, “지분상품”, “교환차이”, “공정가치 해지회계 시스템”, “고정금융자산”, “금융상품”, “외국법인”, “해지회계”, “해지회계시스템”, “해지항목”, “해지상품”, “매매목적 보유”, “만기보유”, “통화항목”,

“수취계정”, “신뢰가능한 시장” 그리고 “매매 포트폴리오”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제2조).

기타 자산의 대하여 고정자산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사용할 목적인 자산을 의미하고, 현행자산은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3조에서 규정한다. 상장된 투자상품은 해외투자거래 외 인정된 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영국 외에서 신용 있는 주식거래를 기초로 하며, 이는 ‘2000년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의 18장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제5조). 부채의 만기에 관하여는 대주가 상환 요청과 함께 차주에게 모든 선택사항과 권리를 행사한다면, 대출은 상환과 함께 만기로 간주되고 또한 대출 할부금은 지급기일과 함께 만기로 간주된다.(제6조)

손익계산서상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8조는 지분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지분이익은 회사가 다른 기업에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할 주식을 보유한 것의 이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이사의 반대표시가 없다면 지분이익으로 간주한다. 자산의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때에는 회사의 자산 · 원재료 · 자산의 생산에 사용된 소모품비에 관하여 회사가 지불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여 결정한다(제9조). 또한 인건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비, 연금을 포함한다(제11조).

그러나 스케줄 8의 제7항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기입되는 항목의 금액이 무시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스케줄 2를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여기서 고려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시하고 작성할 수 있다(제7조).

V. 결 어

기업의 회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하다. 회계기준의 근거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 회계기준이 법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규와 회계기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의 기업의 회계규범은 상법의 회계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즉, 법규 또는 실체적인 회계기준 어디에도 소규모 회사를 위한 회계규범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

2011년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수는 395,937개로, 등록되지 않은 수를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회사의 결산과정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상 공정가치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이사가 어떤 가치평가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즉, 이사가 기업의 지배구

조를 장악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의 소규모 회사의 회계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제도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우리 법제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규모 회사에 대한 예외규정과

회계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율 방법은 앞으로 법 개정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최 아 름

(해외입법조사위원, 기업법무협회연구원)